

의안번호	2200463
의 퇴 인	김정재 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계번호	24F035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10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2조 542억원, 2035년 2조 6,8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23조 5,486억원(연평균 2조 3,54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10년 연장 (안 제10조 제1항)	-20,542	-21,158	-21,793	-22,446	-23,120	-23,813
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	-24,528	-25,264	-26,021	-26,802	-235,486	-23,54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 제1항(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- (개정안) 2034년 12월 31일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 제1항(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(2024년 말)을 감안 시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2026년부터 발생
 - 2025~2034년 R&D에 대한 세수효과는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~2035년 발생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실적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2년 R&D 세액공제 실적을 활용하되, 국가전략기술 R&D 실적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⁾ 상 2023년 잠정 실적을 활용
 - 정부가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²⁾에서 전망한 ‘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’에 따라 향후 공제액 실적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5년까지 존재하며, 이후 기간은 2025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특례 연장에 따라 기업의 R&D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1) 기획재정부, ‘국무위원후보자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)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’, 2023. 12.

2)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,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, 2024.7.3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10년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 개요) 기술별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음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(당기분)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 - 신성장·원천기술 R&D: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0%, 중소기업 30%
 - 국가전략기술 R&D: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- * ‘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 3 (한도 10%)’ 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

[표 2]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	증가분	25	40	50
	당기분	최대 2 ²⁾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	20~30	20~30 ¹⁾	30~40
국가전략기술		30~40	30~40	40~50

주: 1)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, 공제율 25~40% 적용함

2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‘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’ 로 계산함

□ (공제실적) 2022년 R&D 세액공제 실적은 총 3조 6,173억원 수준

[표 3] 기술유형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2년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	14,512	2,535	5,811	22,858
신성장·원천기술 R&D	292	324	8,176	8,791
국가전략기술 R&D	18	0.2	4,506	4,524
계	14,821	2,859	18,494	36,17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2년 및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 상 ‘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’ 전망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○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: (’24년) 2.5%, (’25년) 3.0%

※ 2026년 이후는 2025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4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<신성장·원천기술>	2023	2024	2025	...	2034	2035
중소기업	306	311	319	...	417	429
중견기업	340	346	354	...	463	476
대기업	8,585	8,730	8,949	...	11,676	12,026
계	9,231	9,388	9,622	...	12,555	12,932
<국가전략기술>	2023	2024	2025	...	2034	2035
중소기업	32	33	33	...	44	45
중견기업	9	9	9	...	12	13
대기업	11,927	12,130	12,433	...	16,222	16,709
계	11,968	12,171	12,476	...	16,278	16,7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 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&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는 일반 R&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
[표 5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10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:
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...	2034	2035
신성장·원천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 (A)	1,342	1,382	...	1,700	1,751
	신성장·원천 공제율 기준 (B)	9,911	10,208	...	12,555	12,932
	차이 (B-A)	8,569	8,826	...	10,855	11,181
국가전략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 (A)	878	904	...	1,112	1,145
	국가전략 공제율 기준 (B)	12,850	13,236	...	16,278	16,766
	차이 (B-A)	11,972	12,331	...	15,166	15,62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2조 542억원, 2035년 2조 6,8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23조 5,486억원(연평균 2조 3,54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10년 연장 (안 제10조 제1항)	-20,542	-21,158	-21,793	-22,446	-23,120	-23,813
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	-24,528	-25,264	-26,021	-26,802	-235,486	-23,54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